# <이용계약에 관한 사항>

1. 계약기간 :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.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
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,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.
1)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,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한다.
2)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.
3)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, 수급자(보호자)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4)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.
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
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
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
④ 신분증 (필요시)
5)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6)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2. 계약목적 : 지역사회에서 정신적,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, 간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(보호자)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,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 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.
3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: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.
1) 재가급여 월 한도액 (2023.01.01. 기준)

|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'22년한도액 | 1,672,700 | 1,486,800 | 1,350,800 | 1,244,900 | 1,068,500 | 597,600 |
| '23년한도액 | 1,885,000 | 1,690,000 | 1,417,200 | 1,306,200 | 1,121,100 | 624,600 |
| 인상율 | 12.69% | 13.67% | 4.92% | 4.92% | 4.92% | 4.52% |

2)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요율 (2023.01.01. 기준)

| 방문당 시간 | '23년 수가 | 15% (일반) | 9% (40%경감) | 6% (60%경감) |
|---|---|---|---|---|
| 30분 | 16,190 | 2,42 | 1,457 | 971 |
| 60분 | 23,480 | 3,522 | 2,113 | 1,409 |
| 90분 | 31,650 | 4,748 | 2,849 | 1,899 |
| 120분 | 40,280 | 6,042 | 3,625 | 2,417 |
| 150분 | 46,970 | 7,046 | 4,227 | 2,818 |
| 180분 | 52,880 | 7,932 | 4,759 | 3,173 |
| 210분 | 58,930 | 8,840 | 5,304 | 3,536 |
| 240분 | 65,000 | 9,750 | 5,850 | 3,900 |

| 구 분 | '23년 수가 | 15%(일반) | 9% (40%경감) | 6% (60%경감) |
|---|---|---|---|---|
| 차량이용(차량 내) | 82,160 | 12,324 | 7,394 | 4,930 |
| 차량이용(가정 내) | 74,070 | 11,111 | 6,666 | 4,444 |
| 차량 미 이용 | 46,250 | 6,938 | 4,163 | 2,775 |

4. 계약해제 :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(될) 수 있다.

1)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
2)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
3)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
4) 일시적인 병원입원,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.

5)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 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

6)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**<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>**

1. 서비스 내용 : 본 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거 사업을 수행한다.

1) 방문요양 : 요양보호사를 대상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서비스와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.

2) 방문목욕 : 이동식 욕조 등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 또는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하여 1급 요양보호사 2명이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.

3) 방문간호 :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전문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기본간호, 간단한 간호 처 치 및 투약 상담 및 관리, 검사 및 운반, 질환에 관련된 교육 및 상담 활동 등 포괄적인 영역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.
4) 복지용구 :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장구 및 복지용구 필요 물품을 제공한다.
2 비용의 부담 :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제도에 의거 책정된 수가를 징수하며,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급하고, 수납금액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.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자격<br>급여 종류</td><td colspan="4">본인부담 요율</td></tr>
<tr><td>일 반</td><td colspan="2">의료수급자<br>감경대상자</td><td>기초생활보호자</td></tr>
<tr><td>방문요양</td><td rowspan="3">15 %</td><td rowspan="3">9 %<br>(감경40%)</td><td rowspan="3">6 %<br>(감경60%)</td><td rowspan="3">0 %</td></tr>
<tr><td>방문목욕</td></tr>
<tr><td>방문간호</td></tr>
<tr><td>복지용구</td><td>15 %</td><td>9 %<br>(감경40%)</td><td>6 %<br>(감경60%)</td></tr>
</table>

3. 기타 비용 부담 등
1)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, 수도, 가스, 전기,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
2) 병원동행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, 서비스요원(요양보호사)의 교 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(단, 요양보호사의 결정권리)

**<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보험>**

기관은 미래에 발생 할 사고에 대비하여 금전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고자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,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 제공직원(간호사, 요양보호사)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.(단, 가족급여 제공자는 제외)

1. 배상책임보험
1) 기관장은 서비스 현장에서 급여제공자의 과실로 대상자에게 상해, 사망을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.
2) 본 기관 배상보험 가입현황 (매년 10월 중 갱신)

| 종 류 | 구 분 | 종 목 | 기 관 | 기 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전문직업<br>배상책임보험 | 요양보호사 | 방문요양/목욕 | 한국사회복지<br>공제회 | 2023.10.12. ~ 2024.10.11 |

**[출처]**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|